

[홍콩] 2017년 6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주요내용

○ 한국 울산지역 수입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

-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에서는 한국당국에서 울산에 고병원성H5N8의 조류독감이 발병했다는 통지를 받아, 6월 16일부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달걀포함) 수입금지 조치 실시
- 식품안전센터 대변인은 홍콩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27톤의 냉동 가금육 및 10만개의 달걀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전하였음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하여 한국당국과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발송한 해당국가에 대한 조류독감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 중으로 해당지역의 병역이 확산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시사점

- 울산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 대한 방역 등에 주의해야 하겠으며 홍콩정부의 한국 가금류 수입에 대한 추후 조치 등에 유의하여 수출업체의 신속한 대처 및 준비 요망
- 출처 : 홍콩식품안전센터 (2017.6.19.)
참고 웹사이트 : 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70616_0868.html

□ 수입 우유와 우유음료 수입규정

- 우유와 우유 음료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홍콩은 식품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공공보건과 지자체 관리, 관련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음
 - ※ 관련 법령 : Chapter 132 관련법령, 조례 제54에 의거 규정
- 조례 제54에 규정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지 못한 어떠한 식품도 판매할 없음, 특히 우유와 우유음료의 규정은 법적 요건과 표준을 명시
- 수입업자는 아래의 주소에서 주요 조례 및 관련 법안 책자를 구매할 수 있음
 - ※ 주소 : Room 626, 6/F, North Point Government Offices, 333 Java Road, North Point, Hong Kong
- 우유, 유제품 음료 수입업자들은 수출국가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수출국가의 식품 안전 의약청의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수입 시 품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수입업자는 우유, 유제품 음료의 수입 절차 및 제품의 특성에 주의해야 함
- 우유, 유제품 수입업자의 수입 관련 신청
 - 제조업체의 허가 승인 신청
 - 홍콩에 수입되는 모든 우유, 유제품 음료관련은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만 수입을 할 수 있음
 - 홍콩 식품 및 환경위생부서의 부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
 - 홍콩에 우유, 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업체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a. 우유,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 b. 우유, 유제품 생산에 관련하여 생산 당국의 허가서
 - c. 라벨이 첨부된 우유, 유제품의 빈 용기
 - d. 우유, 유제품 및 가공 공장의 생산 설비와 물공급 시설, 편의 시설, 열처리 방법에 관련된 정보

- e. 다음의 목적을 위해 생산국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필요
 - ① 위생적인 환경하에서 우유, 유제품의 살균, 저온 살균의 효과적인 열처리 방법의 관리, 진행, 패키징에 관련된 인증서
 - ② 제품의 화학적, 세균학 질의 방영
- f. 제품의 유통기한을 증명하는 제조업체의 인증서

○ 수하물의 도착

- 우유와 유제품은 수하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전에 홍콩 식품 환경위생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난 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야 홍콩에 수입이 가능
- 공공 보건 지자체 조례 제 59(1)(c)에 의거 식품 환경 위생청이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 우유, 유제품의 수하물이 도착하여 출고, 판매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의 샘플을 제공, 위생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판매 허가서” 를 발행함

○ 계약 이행

-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은 수입상을 포함한 공공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우유, 유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a. 제조원의 허가 신청을 받은 12일 이내로 진행해야 함
 - b. 실제 배송물의 도착일과 도착 통지를 받은 일, 두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출 허가서” 를 발급해야 함
- ※ 우유, 유제품 수입과 샘플의 가격지불과 관련된 신청과 문의
 - 식품 안전과 와 식품 및 환경 위생청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전화 : 852) 2867 5990 또는 24시간 핫라인 852) 2868 0000.

III 통관문제사례

- 해당사항 없음